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83
----------	-------

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이광희 · 조계원 · 허성무
박해철 · 김문수 · 이재강
민병덕 · 채현일 · 윤건영
황명선 · 문금주 · 김우영
박지원 · 임미애 · 김승원
장종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신청을 허가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식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비식명조치를 완료하여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소송기록의 공개 원칙 및 제한) ① 재판의 결과와 그 과정에 관한 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③ 소송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기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 및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생성된 소송기록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소송기록 공개를 위한 준비행위) 제162조 및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이전에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신청을 허가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식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u><단서 신설></u> <u><신 설></u>	<u>④ -----</u> <u>-----</u> <u>-----</u> <u>-----</u> <u><후단 삭제> 다만, 제3항에 따른 비식명조치를 완료하여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⑤ 제4항에 따른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u>

④ ~ ⑥ (생략)

<신설>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62조의2(소송기록의 공개 원칙 및 제한) ① 재판의 결과와 그 과정에 관한 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③ 소송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